

# 정부,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방지 대책 마련

강경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대전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707,366개), 8일 이상은 7.6%(255,879개)나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가 같은 날 2개과 이상 진료 시 동일 의약품을 중복 처방 받거나, 환자가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진료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투약일수를 180일까지 누적했을 때, 7일을 초과하여 중복투약할 수 없다.


한편, 환자가 의료기관을 달리하여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를 위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표 1.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개정안(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
|---|
| <p><b>[1]</b>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p> <p><b>[2]</b> 위의 세부인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 처방할 수 있다.</p> <p>가.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br/>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중복 처방하는 경우<br/>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br/>라. 기타 중복 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b>[3]</b> 제2호에 따라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가. 제2호 다 목에 해당하는 경우<br/>나. 제2호 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 소실이 있는 경우 등 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p>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 5. 13)